

4) 질병휴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은 별도의 질병·육아·가족돌봄 휴·복직 처리 지침에 의한다.

※ 질병, 육아, 가족돌봄 휴·복직의 허가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 가. 근거규정: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개정(2021.11.04.)
- 나. 1호 질병휴직, 7호 육아휴직(7의2, 7의3호 포함), 9호 가족돌봄휴직 발령(복직발령 포함)을 학교에서 내부결재로 학교장 발령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에 발령 보고(중·고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 발령 보고
- ※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원인사정책과로 보고
- 다.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자녀별로 휴직을 허가하고 있어 대상자녀를 달리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라. 동일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휴직을 할 경우 휴직연장 발령
- 마. 타교복직 대상자가 질병이나 육아, 가족돌봄휴직을 계속할 경우 복직 시에는 타교복직자로 도교육청(교원인사 정책과)에 복직원 제출(중·고등학교)

5) 연수휴직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2021.11.04.)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6) 동반휴직의 경우 휴직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휴직을 허가하며, 휴직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7)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 교감: 교육장, 교장: 교육감)가 허가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1년 이내(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이며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8) 모든 청원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항,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단, 육아휴·복직은 육아휴직처리기준에 의거 휴직허가),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